

2016 TIP Report Questions

The 2016 TIP Report will cover efforts by governments during the reporting period (April 1, 2015 - March 31, 2016).

2016년도 미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는,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 까지의 한국정부의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노력을 담게 될 것입니다.

We request data on investigations, prosecutions, convictions, and sentences of trafficking crimes. As evidence of political will to address trafficking, in accordance with the TVPA's minimum standards, we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receiving data on investigations, prosecutions, convictions, and sentences of corrupt public officials that involve crimes linked to TIP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raudulent issuance of visas or passports to traffickers; tip-offs given to traffickers of impending law enforcement action; bribes accepted by government officials to facilitate the movement of trafficked victims; and direct involvement in trafficking). Government prosecutions of alleged corrupt officials generally have a positive impact on tier rankings.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유죄판결 그리고 형집행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의 (TVPA –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최소기준에 따라,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의 증거로, 특별히, 인신매매와 연관이 있는 범죄에 연류된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 기소, 유죄판결 그리고 형집행에 관한 데이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범에게 발행되는 사기성 비자나 여권, 법집행을 방해하게 하는 인신매매범들에게 건네는 제보; 인신매매 피해자의 이동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공직자가 받는 뇌물; 그리고 인신매매에 직접 관여함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부패 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한 정부의 기소는 대체적으로 국가별 인신매매 등급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REPORTING QUESTIONS

1. OVERVIEW OF THE COUNTRY'S TIP SITUATION:

1) PROFILE: How has the country's TIP situation changed since last year (if it has) and provide any new information on trafficking patterns.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how the country is a source, destination, or transit country for trafficking crimes or trafficking victims – with examples, where possible. Note whether there has been an evolution in how citizens or non-citizens are subjected to trafficking, including forced or bonded labor, forced begging or forced criminal activity (e.g., drug smuggling), prison labor that is not the product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and/or sex trafficking (including the prostitution of children under 18 years of age by a third party). Has there been a change in the countries/regions from which trafficking victims are recruited or to which they are taken for exploitation?

대한민국 인신매매 상황 개관: 지난해 이후 대한민국 인신매매 상황에 변화가 있었다면, 인신매매 유형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인신매매 범죄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송출국, 목적국이나 경유국인지에 대한 정보를 가능하다면, 예를들어 설명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시민이든 아니든 강제적 또는 담보된 노동, 강제구걸이나 강요된 범죄행위 (예를들어, 마약밀수), 법원에서 내린 유죄판결의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닌 교도소에서의 노동 및 성적 인신매매 (제 3자에 의한 18세 미만의 아동매춘을 포함) 등으로 인신매매를 당하는데 있어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 주십시오. 인신매매 피해자가 모집되거나 그들을 착취할 목적으로 데려가는 국가/지역이 달라졌습니까?

==> 여성가족부가 2015년 3월부터 조사하여 5월에 발표한 '전국 학년전환기 청소년 전수조사 결과' 중 '2015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15만1,915명으로 집계됨. 같은 맥락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건 만남 알선과 성매매 등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고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은 아직 미흡하다. 구글 플레이에는 '채팅' 카테고리에 올라온 것은 200여개가 넘는다. 그러나 이 중에서 성인 인증을 요구하는 앱은 64개에 불과해 미성년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아무런 제한 없이 수시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실제 방심위가 성매매 등 유해정보 유통으로 채팅을 차단한 사례는 2015년 10월 26일 현재 단 한건도 없다. 성매매에 주로 이용되는 '랜덤채팅'은 성인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이 조건만남과 성매매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용자가 신분을 숨길 수 있고 IP 기록이 남지 않아 추적도 어렵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중고생 3,65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 가량이 랜덤 채팅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나 알선 등 범죄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 경우가 전체의 47.2%에 달한다.

대표적인 사건은 2015년 3월 26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14세 청소녀가 살해당한 것을 들 수 있다.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으로 명명하고 많은 단체들이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을 만들어서 활동했다. 이 사건은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두 사람의 성매매로 시작되었다. 결국

강제 성매매의 피해자로 몇 달을 지냈던 14세 청소녀는 성인 남성에 의해 성폭행 도중 살해되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청소녀가 살해되었기 때문에 크게 이슈화 되었고,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성착취 아동, 청소년이 있을것으로 파악된다.

2) VULNERABILITY TO TIP: Please report any changes in the identified groups of persons who are at risk of sex trafficking and labor trafficking (e.g., women and children, boys versus girls, specific ethnic groups, refugee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migrants, persons with disabilities, stateless populations, lesbian, gay, bisexual, or transgender individuals, etc.).

인신매매의 취약성: 성적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인신매매 위험에 처한 자들로 확인된 그룹에 변화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예를들어, 부녀자, 소년.소녀, 특정 민족집단, 망명자, 국내실향민, 이주자, 장애인, 무국적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또는 성전환자, 등)

==> 청소년들이 위에서 언급한 스마트폰 채팅으로 쉽게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도 하고, 어른들은 그것을 악용하여 더 어린 여성들을 성매매한다. 예를 들어 14세 청소녀가 살해당했던 사건의 경우도 알선자 3명은 채팅앱에서 여성들을 모집하고 면접을 보고 다른 여성 그리고 14살 소녀를 데리고 모텔에 함께 기거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그리고 그 소녀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성매수자와 계약을 하고 성매수자에게 데려다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어린 소녀들은 채팅 앱을 통해 성적 인신매매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또한 그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3) TRAFFICKERS AND THEIR METHODS: Have the profiles of perpetrators changed in the last year? Is any new information available on this topic?

인신매매자들과 그들의 수법: 지난해에 범죄자의 프로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새로운 정보가 있다면 제공해 주십시오.

==> 성매매도 인신매매로 보는 관점을 가진 본 단체에서는 인신매매 범죄자들의 범위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급속히 확대되었다고 본다. 그들은 평범한 가장으로 보이기도 하고, 성실한 직장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매매 집결지로 가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고 너무나 보편화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얼마든지 빠져나가거나(처벌 사례 미미함), 둘러댈 수 있다(상대도

적극적으로 원했다고 믿기 때문에 예비범죄자의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고 본다. 성매수자들은 명백한 범죄임에도 ‘성매매’가 아닌 ‘조건만남’, ‘애인대행’, ‘단기 데이트’등으로 다르게 명명하며 법망을 피하고 있다. 나아가 성폭력을 하고도 차비나 용돈 등으로 적은 돈을 주어 청소년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성폭력보다 성매수가 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2. CONTEXT OF THE GOVERNMENT'S ANTI-TIP EFFORTS:

정부의 반인신매매 노력에 대한 내용:

1) POLITICAL WILL AND ACKNOWLEDGMENT OF THE PROBLEM: Did government officials demonstrate political will to combat human trafficking? Was this political will demonstrated at the highest levels of government or at working levels or at both? During the reporting period, did the government newly acknowledge that sex trafficking and/or forced labor are problems in the country? Please only report if the acknowledgments are new.

정부의 의지와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인지: 정부 공직자들은 인신매매와 싸우기 위한 정치적 의지를 보였습니까? 이러한 정치적 의지는 정부 고위직에서였습니까? 또는 실무진에서였습니까? 고위직과 실무자들 모두에게서 보였습니까? 이 보고기간 동안, 정부는 대한민국 내에서 성적 인신매매 또는 강제노동이 문제임을 새롭게 인정하였습니까? 새롭게 문제 인식이 되었을 경우에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2) MAJOR ACCOMPLISHMENTS: What were the government's major accomplishments in addressing human trafficking over the reporting period?

주요 성과: 이 보고기간 동안,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정부가 이루어낸 주요 성과는 무엇이었습니까?

3) KEY DEFICIENCIES: What were the greatest deficiencies in the government's anti-trafficking efforts over the reporting period? What areas require increased government attention?

이 보고기간 동안, 정부의 반인신매매 노력에 있어 가장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어떤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까?

==>(1) 작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청소년 성착취 문제가 일어났지만 그 문제가 법정에 섰을 때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그 문제를 가해자 편이 되어서 바라보는 법의 해석의 대표적인 두 가지 틀은 1) 피해자가 성범죄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 2) 그것은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이다. 실제 이런 말들은 판결문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이 대한민국은 만 13 세이다. 이 연령 기준은 1950년대 제정형법 당시부터 규정되어 현재까지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다. 앞서 언급한 스마트폰 보급률과 채팅 이용률, 그리고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13세부터 16세까지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성범죄 피해자가 쉽게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 나이의 청소년들은 정당하게 돈을 벌 수도 없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혼자 가입하라 수도 없고, 증인으로 선서를 하지도 못하며, 투표를 할 수도 없으며, 혼인도 할 수 없지만, sex는 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성인들이 적당한 돈으로 쉽게 성을 매수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가부장적인 한국문화 안에서 피해 청소년들이 쉽게 자신이 겪은 일을 신고하기도 어려운 문화적인 배경도 그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데 한 몫을 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정부가 법률을 개정할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의제강간 연령이 적어도 16세로 상향되는 법개정이 필요하고 남인순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의원이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16세 미만으로 상향 개정 추진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10173733&code=46111201&cp=nv>
(2015.12.18, 쿠키뉴스)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법률안 개정필요 – 여성가족부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

아동청소년의 성적인신매매 예방을 위해 성매수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을 성착취의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관련법의 ‘대상 청소년’ 정의 조항 삭제 ‘선도보호처분’ 조항 삭제 및 보완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여, 2015년 10월 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의원발의를 통해 개정안이 국회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주관부서인 여성가족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었다.

‘대상청소년’ 조항과 선도보호 조치로 인해 성적 인신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으로 취급되어 신고조차 꺼리게 되고, 경찰들도 이 청소년들을 제대로 피해자로 돋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인신매매법·성차별성희롱 금지법 '불발'...2년째 공회전

[the300]여가위 법안소위서 여가부, 쟁점 법안마다 '신증검토' 의견

<http://m.the300.mt.co.kr/view.html?no=2015111618597692093>

(2015.11.16. the300)

(3) 알선자, 성매수자들의 유인행위에 대한 적극적 수사기법 도입 필요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 와 랜덤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급격한 환경변화는 청소년들의 유인에 대한 예방과 알선자와 성매수자의 추적이나 검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성착취 범죄자들의 유인행위 단계부터 수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적 인신매매가 일어나기 직전에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4) GOVERNMENT ANTI-TRAFFICKING INFRASTRUCTURE: During the reporting period, which agency, if any, had the lead in government anti-trafficking efforts? Has the government appointed a lead person on all forms of TIP and is there a national coordinating body? In what ways was this body effective or ineffective? What specific results did this body produce in the reporting period? Which government agencies were involved in efforts to combat sex trafficking and forced labor?

정부 반인신매매를 위한 기반시설: 이 보고기간 동안, 어느 기관이 정부의 반인신매매 노력을 주도하였습니까? 정부는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문제를 이끌어갈 사람을 배정한 적이 있습니까? 국가적 협력기관이 있습니까? 이 기관이 어떤 면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면에서 그렇지 못하였습니까? 이 보고기간 동안, 이 기관은 어떠한 특정의 결과물들을 내었습니까? 어느 정부기관들이 성적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문제와 싸우는데 함께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5) OBSTACLES AND RESOURCE LIMITATIONS: What were the limitations on the government's ability to address human trafficking problems in practice? Were there any extenuating circumstances during the course of the reporting period that hindered government efforts, such as a natural disaster, civil unrest, etc.? Were there other, more bureaucratic or systemic issues, such as inadequate institutions or inadequate funding for police? Was overall corruption a problem? Did the government lack the resources to aid victims?

방해물과 자원제한: 인신매매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루는데 있어, 정부의 역량에 어떠한 제한이 있었습니까? 이 보고기간 동안, 자연재해, 국내 불안정 등으로 방해가 되어 정부의 노력을 경감시킨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 외에, 좀더

권위주의적이거나 제도적 문제가 있었습니까? 전반적인 부패가 문제시 되었습니까?

6) OFFICIAL COMPLICITY IN TRAFFICKING CRIMES: What was the extent of official complicity in trafficking crimes? Were officials operating as traffickers in facilitating the exploitation of persons in forced labor and/or sex trafficking offenses or take actions which may facilitate trafficking (including accepting bribes to allow undocumented border crossings or suspending active investigations of suspected traffickers, etc.)? Were there examples of trafficking occurring in state institutions (prisons, child foster homes, institutions for mentally or physically handicapped persons)? Was official involvement in trafficking crimes part of a national directive or policy? Was overall corruption a problem? What proactive measures has the government taken to prevent official complicity in trafficking in persons crimes? How has the government responded to reports of complicity that arose during the reporting period?

국가공무원들의 인신매매 범죄 연류: 인신매매 범죄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들의 연류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들은 강압적 노동 인신매매와/또는 성적 인신매매 범죄에 있어서 사람들의 착취를 용이하게 하는 인신매매범으로서 움직이든지 또는 인신매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불법 국경횡단을 허가해 주기 위한 뇌물수수 또는 인신매매 용의자들에 대한 활발한 수사의 중단을 포함하여) 행동을 취합니까? 이 보고기간 동안, 국가기관에서 (교도소, 아동양육기관, 정신지체아 또는 장애인 기관) 일어난 인신매매 경우가 있었습니까?

국가공무원들의 인신매매 연류문제는 국가 지시 또는 정책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보고기간 동안, 국가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부패가 문제시 되었습니까? 정부는 어떠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 공무원들이 인신매매 범죄에 연류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까? 정부는, 이 보고기간 동안 일어났던 공무원 연류에 대한 보고에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3.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CONVICTION OF TRAFFICKING CASES:

인신매매 사건의 조사, 기소와 유죄판결:

1) TRAINING: Describe the government's specialized anti-TIP training for police, investigators, prosecutors, judges, and other officials (including labor inspectors, social workers, etc.) on identifying and assisting victims of trafficking and/or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human trafficking cases during the reporting period. Specify who funded such training, the government's specific role in the training (including financial or in-kind contributions), when the training(s) took place, and the number of persons trained. Also specify whether NGO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or the U.S. government were involved, and briefly describe the involvement (e.g., lead training seminars, organized

trainings).

교육: 이 보고기간 중, 경찰, 수사관, 검사, 판사, 여타 공무원들의 (근로감독관,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과 지원 및 인신매매 사건의 수사.기소에 관한 전문화된 정부의 반인신매매 교육 프로그램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누가 재정을 지원했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어 정부의 특정 역할 (재정 혹은 현물 기부 포함), 교육이 언제 실시 되었는지,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또한 NGO, 국제기구 및 미국 정부가 연관되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로 참여한 것인지(예를들어, 교육 세미나 주도, 훈련 조직 등)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2) DEFICIENCIES IN APPLYING LAW: Is there any evidence that the government failed to apply laws fairly in trafficking cases based on thorough investigations and in proceedings that protected the due process rights of the accused?

법 적용의 결함: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근거로 한 인신매매 케이스에 있어, 피고의 절차를 밟을 권리를 보호하는 진행과정에 있어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 대한민국은 작년과 다름없이 여전히 성매매 매수자와 성판매 제공자 모두가다 단속대상이 된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대상청소년’으로 명명되므로 성매수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도 피의자로 취급되어 신고를 꺼리게 된다. 아동청소년 법 상 성매수의 권유, 유인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피해 청소년’이 되지만, 성매수의 대상이 되면 ‘대상 청소년’이 되어 진술 조력인 지원 등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중단이 되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찰들이 수사과정에서 ‘너도 처벌을 받게 된다’거나 ‘학교에 통보될 수 도 있다’고 하는 등으로 청소년들이 피해자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신고 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성매수자들도 이를 이용해 ‘신고한다’고 오히려 청소년을 협박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적 인신매매 및 성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다.

3) ALLEGATIONS OF OFFICIAL COMPLICITY: Please describe allegations of trafficking involving complicit officials or government entities- including peacekeepers and diplomats. What were the alleged complicit actions of these officials or entities? What was the source of the allegations? Have officials or government entities played an active role in or facilitated the trafficking of a person or persons? How widespread is the involvement of officials in a particular form of trafficking and is it supported by their agency or leadership?

Please report any allegations and/or indictments and prosecutions of foreign diplomats posted in South Korea on charges of sex or labor trafficking (such as compelling domestic household employees to work), including through violence and coercion.

공적 연루 혐의: 인신매매 혐의에 연루된 공무원이나 정부기관과 관련하여 (외교관과 평화유지군 포함), 이러한 공무원이나 기관의 연루행위 혐의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혐의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려 주십시오. 인신매매를 하는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거나 이를 용의하게 한 공무원이나 정부기관이 있었습니까? 공직자간에 특정 인신매매 유형의 연루가 얼마나 퍼져있으며 그들이 속한 기관의 리더쉽들이 이를 옹호합니까?. 한국에 배치된 외국 외교관의 성적 인신매매 혹은 노동착취 인신매매 범죄와 연관된 주장이나 기소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면 어떠한 것도 알려 주십시오. (예를들어, 폭력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그들의 자국민 가사도우미를 강제로 일하게 하는 것)

4. PROTECTION AND ASSISTANCE TO VICTIMS:

1) VICTIM CARE SERVICES OVERVIEW: What types of victim care services were available to trafficking victims? Were these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NGOs, or jointly? Were these services dedicated to TIP victims or shared with other types of victims (e.g., domestic violence, sexual assault, refugees/asylees, etc.)? Please specify the kind of assistance, including medical and psychological services, that the government provided to foreign and domestic TIP victims. Which foreign embassies (if any) provided shelter or protective services to their nationals who were trafficking victims?

피해자 보호서비스 개관: 인신매매 피해자가 이용 가능한 피해자 보호 서비스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서비스들은 정부, NGO 혹은 양측 공동으로 제공됩니까? 이러한 서비스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역점을 둡니까? 혹은 가정폭력, 성폭행, 난민/망명 희망자 등의 피해자에게도 제공됩니까? 의료, 심리서비스를 포함하여, 내국인·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정부가 어떠한 지원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만약 있다면, 어느나라 대사관에서 자국민 피해자에게 쉼터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2) VICTIM CARE QUALITY: What was the overall quality of victim care? Please consider the following questions in this assessment. Did foreign victims have the same access to care as domestic trafficking victims? Where were child victims placed (e.g., in shelters, foster care, or juvenile justice detention centers) and what kind of specialized care did they receive? Could adult victims leave shelters unchaperoned and at will? Did the government provide specialized care for male as well as female victims? Did the government provide services that were accessible for victims with disabilities (e.g., physical access for wheelchair users,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for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s, etc.)?

피해자 보호의 질: 피해자 보호의 전반적인 질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피해자 역시 내국인 피해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동 피해자는 어느 곳에 보내지며 (예를들어, 쉼터, 위탁센터, 소년원 등), 어떠한 특화된 보호를 받습니까? 성인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수행자 없이 쉼터를 떠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정부는 남성 피해자에게도 여성 피해자와 같은 전문화된 보호를 제공합니까?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예를들어,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신체적 접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등) 역시 제공합니까?

3) VICTIM IDENTIFICATION AND ASSISTANCE STATISTICS: What was the total number of trafficking victims identified by the government during the reporting period (where possible, please indicate whether labor or sex trafficking, gender, and whether a child or adult)? Of these, how many victims did the government refer to care facilities for assistance? How many victims were identified during the reporting period by NGOs or other non-governmental entities (including through self-identification)? How many trafficking victims in total (whether referred by the government or other entities) did facilities assist during the reporting period?

피해자 신원확인 및 지원 통계: 이 보고기간 중, 정부가 확인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전체 수는 어떻게 됩니까? 강제노동 인신매매, 성적 인신매매, 성별 그리고 아동피해자, 성인피해자인지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이들 중 정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로 보낸 피해자는 몇 명입니까? 이 보고 기간 중, NGO 나 여타 비정부 단체에 의해 확인된 피해자는 몇 명입니까? (자진 신원확인 포함). 이 보고기간 중, 보호시설이 지원한 총 인신매매 피해자 수는(정부 또는 여타 단체가 보낸 자이든 아니든) 몇 명입니까?

4) VICTIM IDENTIFICATION PROCEDURES: Did the government's law enforcement, immigration, and social services personnel have formal written procedures to guide officials in proactive identification of victims of trafficking among high-risk persons with whom they come in contact (e.g., undocumented migrants and persons arrested for prostitution)? If so, please describe the system, if it was newly established, and whether it worked in practice.

피해자 신원확인 절차: 정부의 법집행, 이주, 사회서비스 관계자들은 그들이 접촉하는 인신매매 피해의 고위험성 가진 자들 중에서 (밀입국 이주자 및 매춘행위로 체포된 사람 등), 인신매매 피해자를 주도적으로 식별하는데 쓰이는 서면으로 작성된 공무원용 절차 가이드를 갖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제도가 신설된 것인지, 실제로 실행된 적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5) VICTIM REFERRAL PROCEDURES: Did the government have a referral process to guide officials in transferring trafficking victims detained, arrested, or placed in protective custody by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o institutions that provide short- or long-term care (either government- or NGO-run)? If so, please describe the process and whether it worked in practice. If victims were referred to NGO facilities, please describe the NGOs' opinions of that referral process.

피해자 위탁 절차: 정부는 사법당국에 의해 구금, 구속 혹은 보호구치된 인신매매 피해자를 단기 혹은 장기 보호기관으로 (정부가 운영합니까? 아니면 NGO 가 운영합니까?) 보낼 때 쓰이는 공무원용 위탁절차 가이드를 갖고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절차과정과 실제로 실행된 적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만약 피해자가 NGO 운영 시설에 위탁되었다면, 그 위탁절차에 대한 NGO 측의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6) TREATMENT OF FOREIGN VICTIMS: Did the government provide, through a formal policy or otherwise, temporary or permanent residency status, or other relief from deportation, for foreig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who may face retribution or hardship in the countries to which they would be deported? If so, how many victims received deportation relief? Were such benefits linked to whether a victim assisted law enforcement, participated in a trial or whether there was a successful prosecution? Did the government provide, through a formal policy or otherwise, longer-term shelter or residency benefits to victims? If so, were victims given the opportunity to seek legal employment while in this temporary or permanent residency status?

외국인 피해자 치료: 정부는 한국에서 추방되어 본국에서 보복이나 곤란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는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공식적인 정책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임시거주권이나 영주권 혹은 강제송환으로부터 구호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혜택이 피해자를 법집행에 협조하게 한다든지, 재판에 참석하게 한다든지 혹은 성공적으로 기소하게 하는것과 연관이 있었습니까? 정부는 외국인 피해자에게 공식적인 정책 혹은 여타의 방법을 통해 장기 보호시설이나 주거지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피해자들에게 영주권이나 임시 거주권자 신분으로 합법적인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7) PUNISHMENT OF TIP VICTIMS: Were trafficking victims (either identified or

unidentified by authorities) detained, fined, or jailed for unlawful acts committed as a result of their being trafficked (e.g., immigration or prostitution violations, or other charges)?

Please contact NGOs and foreign embassies to solicit their input to this question.

인신매매 피해자 처벌: 인신매매를 당한 결과로 저지르게 된 불법행위로 (예를 들어, 불법이민이나 매춘 또는 여타 혐의 등,) 인해 구금, 벌금형 혹은 징역형에 처해진 인신매매 피해자가 (당국에 의해 신원확인이 되었던 안 되었던) 있었습니까?

8) VICTIM ASSISTANCE IN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How did the government encourage victims to assist i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trafficking? Examples of encouragement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immigration relief and funding for transportation and lodging to assist victims' participation. Encouragement should not be confused with coercion by, for example, compelling a foreign victim to testify by not permitting the victim to leave the country until the end of the trial. Is there a formal policy in place that encourages victims' voluntary participation in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If so, please provide examples of cases where victims assisted i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traffickers during the reporting period. How did the government protect the victims during the trial process? If a victim was a material witness in a court case against a former employer, was the victim permitted to obtain employment or to leave the country pending trial proceedings? How did the government work to ensure victims were not re-traumatized during participation in trial proceedings? Can victims provide testimony via video or written statements? Were victims' identities kept confidential as part of such proceedings?

수사와 기소 관련 피해자 지원: 정부는 어떻게 피해자들이 검찰 수사 및 기소에 협조하도록 독려합니까? [이러한 독려에는 이민 구제와 피해자들의 참석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의 자금제공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국한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독려는 '강압'과 혼동되어서는 안되는데, 예를들면, 외국인 피해자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출국금지 시킴으로써 증언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수사와 기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게 하는 공식적인 정책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이 보고기간 중, 피해자가 인신매매범의 수사 및 기소에 협조한 케이스를 몇가지 예로 들어 설명하여 주십시오. 재판 과정 중 정부는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했습니까? 만약 어떤 피해자가 전 고용주를 상대로 한 법정소송에서 중요 증인이었다면, 해당 피해자는 재판절차 중에 다른 직업을 구하거나 출국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습니까? 정부는 피해자 법정소송 기간동안 또다시 충격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지원을 합니까? 피해자들은 비디오 증언을 하거나 서면진술서를 낼 수 있습니까? 피해자들의 신분은 이와 같은 절차의 일부분으로

기밀사항입니까?

9) RESTITUTION AND CIVIL SUITS: Were there means by which a victim could obtain restitution from the government or file civil suits against trafficking offenders for such restitution, and did this happen in practice during the reporting period?

배상 및 민사 소송: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거나 이러한 배상을 받기 위해 인신매매범에게 민사 소송을 하기 위한 수단이 있었습니까? 이 보고기간 중,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5. PREVENTION:

1) NATIONAL ACTION PLAN: Did the government have a national plan of action to address trafficking in persons? How was it implemented in practice? If the plan was developed during the reporting period, which agencies were involved in developing it? Were NGOs consulted in the process, and what do they think of the plan and its implementation? What resources are provided in support of the plan (budget, facilities, staff)?

국가행동계획: 정부는 인신매매 문제를 다룰 국가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었습니까? 만약, 그 계획이 이 보고기간 중에 만들어졌다면, 어느 기관이 그것에 관여하였습니까?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비정부기구들의 자문이 있었다면, 비정부기구 측의 이 계획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었으며, 이러한 계획이 실행 되었습니까? 이 국가행동계획을 지원하는데 어떠한 재원이 제공됩니까? (예산, 시설, 인력지원)

2) AWARENESS CAMPAIGNS: Please describe any government-funded anti-trafficking information or education campaigns conducted during the reporting period. Did these campaigns target potential trafficking victims and/or the demand for trafficking (e.g., "clients" of people in prostitution or beneficiaries of forced labor, such as employers)? Which NGOs, international organization were involved and what kind of programs were they associated with? Was the U.S. government involved?

인식 캠페인: 이 보고기간 중,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실시된 반 인신매매 관련 정보 또는 교육 캠페인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러한 캠페인들은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 및 수요자들을 (예를 들어, 매춘에 관련된 고객, 고용주와 같은 강제노동으로 인한 수익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비정부기구와 국제기구가 관여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어떠한 프로그램에 관련하고 있습니까? 미국정부도 관여하고 있습니까?

3) IDENTIFICATION MEASURES: What measures did the government take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local populations, including birth registration and issuance of documentation, citizenship, and nationality? Local populations include citizens, foreign nationals, stateless

populations, as well as internally displaced peoples, refugees, etc. Over the past year, have there been any legislative changes or proposed changes related to any of these issues?

신원확인 방법: 출생신고, 서류발행, 시민권 및 국적을 포함한 지역인구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지역인구에는 시민, 외국인, 무국적자와 국내실향민, 난민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동안,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입법적 변화나 변경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까?

4) CHILD SEX TOURISM: What measures did the government take during the reporting period to reduce th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child sex tourism by South Koreans? Do child sex tourists travel to South Korea and if so, from what countries? How many foreign child sex tourists did the government prosecute or deport/extradite to their country of origin? If South Korean nationals are perpetrators of child sex tourism, do the country's child sexual abuse laws have extraterritorial coverage to allow the prosecution in South Korea of suspected sex tourists for crimes committed abroad? If so, how many South Koreans were prosecuted and/or convicted during the reporting period under the extraterritorial provision(s) for traveling to other countries to engage in child sex tourism?

아동성관광: 이 보고기간 중,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외에서의 아동성관광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동 성매매 관광객들은 성매매를 위해 국내로 들어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성매매 여행객들의 출신국가는 어디입니까? 정부는 몇 명의 아동 성매매 관광객들을 기소하거나 본국으로 추방/인도 하였습니까? 만약 대한민국 국민이 아동성관광의 범죄자인 경우, 해당국의 아동학대법은 해외에서 저지른 성관광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국내에서 기소할 수 있는 역외 조항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보고기간 중, 아동성매매 관광을 하고자 여타 국가로 여행한 혐의로 이 조항 아래 기소 및 유죄판결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은 몇 명입니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동성관광의 가해자인 경우 성관광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처벌하는 법령이 있다. 관광을 간 국가가 성매매가 합법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성매수를 했다면 대한민국 형법상 불법이다. 일부 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카페들이 필리핀, 태국을 주요 국가로 하는 성매매 관광을 알선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단속이나 처벌은 미비하다. 2015년 8월 해외성매매를 집중 단속한 결과 384건을 적발하고 1,303명을 검거 하였지만, 이 중 39명만을 구속했다. 기소까지 이어지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인지 알기가 어렵다. 본 단체가 느끼는 해외 아동 성관광을 줄이기 위한 한국정부의 실제적인 노력은 매우 소극적이다.